

개방형직위 운영 규칙

제정 2024. 01. 12. 규칙 제175호

개정 2024. 03. 12. 규칙 제1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제5조(정원 및 직급)에 따라 개방형직위 채용 및 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인사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제2조(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2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03. 12.>

⑤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채용 내용 중 채용계획, 시험과목,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의 결정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03. 12.>

제3조(직무 수행 요건의 설정) 임용권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 사유 발생 시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채용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개방형직위 임용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를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개방형직위 임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3. 12.]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임용 시에는 진흥원 내·외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문화예술 산업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문화예술산업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3. 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경영 및 조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채용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면접 및 발표)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인원은 채용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3. 12.]

제6조(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이 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장 채용위원회

제7조(채용위원회 구성) ① 진흥원은 개방형직위 임용 선발시험, 연임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3. 12.>

②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03. 12.>

1. 개방형직위 임용 선발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계약만료 예정일 2개월 이전
3.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연임 예정일 4개월 이전
4. 그 밖의 결원 등의 사유로 새로이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14명 내외로 구성하며, 각 전형별 위원 구성은 7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4. 03. 1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산업 및 교육 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문화예술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4.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관리자급(국장, 실장, 본부장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5. 문화예술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당해 진흥원의 임직원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除斥)·회피·기피 할 수 있으며,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시험대상자 경우
2.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시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 있었던 경우
3.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가장 가까운 상급자이거나 가장 가까운 상급자였던 경우
4.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 ① 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임용 또는 연임심사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한다.

② 해당 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임용 또는 연임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03. 12.>

제10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03. 12.>

1.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의 변경 심사
2. 개방형직위 임용 후보자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면접 및 발표) 심사
3. 개방형직위 임용 합격자 선정 및 다음 순위자 선정
4. 개방형직위 임용자 연임 심사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소집한다.

② 각 전형별 위원회는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개정 2024. 03. 12.>

③ 위원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진흥원 인사 담당업무 주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심사 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개방형직위 임용 절차) ① 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임용대상자를 선발하여 임명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용대상자가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 합격자도 선발해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 파면 또는 징계면직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5. 채용 비위에 의하여 채용된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형, 파면·해임, 치료감호, 집행유예 등을 확정받은 자

② 제1항의 결격사유가 채용 후에 확인된 때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한다.

③ 본조 제1항 제5호의 비위 채용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응시를 제한한다.

제15조(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 ① 진흥원은 개방형직위 임용대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연임 시에는 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일 이상 부천시와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하여야 한다.

1.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임용 예정 수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2. 임용대상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⑤ 이미 공고한 내용 중 공고기간, 접수기간 내용을 변경할 때는 모집 마감 7일전까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3. 12.>

⑥ 채용공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3. 12.>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선발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선발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6.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에 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03. 12.]

제16조(지원서 접수) ①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3. 12.>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제5조 제1항의 적격대상의 증빙
6. 면접전형시 발표자료 및 기타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 필요 자료

제17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직무수행과 개방형직위 임용 운영 규칙의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면접 및 발표)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서류전형 시 각 응모자의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위원회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면접전형(면접 및 발표) 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심사를 받는다.

⑤ 면접전형(면접 및 발표) 시 각 응모자의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위원회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⑥ 면접전형(면접 및 발표) 위원회 평균 점수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최종 임용 후보자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4. 03. 12.]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서류 적격 검증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심사 수당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채용과정 공개) 임명권자는 개방형직위 임용 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기타)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진흥원 제규정을 준수하며,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4. 01. 12. 규칙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3. 12. 규칙 제1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